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13호로 2024년 4월 9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 하고, 그 휴가일수를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제가목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제4호 본문에 “장기재직자”를 “공무원”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9급 국가직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21.8대 1에 그쳤으며, 5년 미만 저연차 국가공무원의 퇴직공무원의 수는 2019년 기준 6,663명에서 2022년 1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퇴직 원인으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추세임.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특별휴가 기간
1	경기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3일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3	평창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일
4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5	보령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일
6	서천군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일
7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8	예산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일
9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0	청주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일
1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3일
1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14	안양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3일
1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6	완주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일
17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우리 구에서도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9명, 2022년 12명, 2023명 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이 상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략)